

부산직할시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 조례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: [별표 1]의 지급구분표
2.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: [별표 2]의 지급구분표

제 3 조(방법수당) ① 영 별표 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법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의 지급액은 월 40,000원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경력연수에 따라 [별표 3]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
월수당 지급액	609,000원 이하	518,000원 이하

비 고 :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
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로 한다.

[별표 2]

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근무년수별	등급별	가 급	나 급
5 년 이 상		월 1,012,000원 이하	월 673,000원 이하
4 년 이 상		월 1,006,000원 이하	월 667,000원 이하
3 년 이 상		월 1,000,000원 이하	월 661,000원 이하
2 년 이 상		월 995,000원 이하	월 656,000원 이하
2 년 미 만		월 989,000원 이하	월 650,000원 이하

비 고 :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

[별표 3]

방법수당가산금 지급구분표

자 율	방 법	근 무	년 수	가 산	지 급	액	비 고
	1년이상	2년미만		월	8,000원		
	2년이상	3년미만		월	16,000원		
	3년이상	4년미만		월	24,000원		
	4년이상	5년미만		월	32,000원		
	5년이상	6년미만		월	38,000원		
	6년이상	7년미만		월	44,000원		
	7년이상	8년미만		월	50,000원		
	8년이상	9년미만		월	56,000원		
	9년이상	10년미만		월	62,000원		
	10년이상	11년미만		월	66,000원		
	11년이상	12년미만		월	70,000원		
	12년이상	13년미만		월	74,000원		
	13년이상	14년미만		월	78,000원		
	14년이상	15년미만		월	82,000원		
	15년이상	16년미만		월	84,000원		
	16년이상	17년미만		월	86,000원		
	17년이상	18년미만		월	88,000원		
	18년이상	19년미만		월	90,000원		
	19년이상	20년미만		월	92,000원		
	20년이상	21년미만		월	94,000원		
	21년이상	22년미만		월	96,000원		
	22년이상	23년미만		월	97,000원		
	23년이상	24년미만		월	98,000원		
	24년이상	25년미만		월	99,000원		
	25년이상			월	100,000원		